

교원산학연구년제운영규정

제 정	2001. 3.
개 정	2006. 3.
개 정	2012. 3.
개 정	2016. 8.
개 정	2020. 10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전임교원이 국내외에서 산학협력연구 활동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산학연구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교원의 “산학연구년”이라 함은 본 대학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전임교원이 본 대학의 수업 등 일정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고 산학연구 및 창업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.

제3조 (연구년의 기간) ①산학연구년의 기간은 1년 또는 학기제로 한다.

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학연구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 당초 승인된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산학연구년 기간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 (자격) ①산학연구년 수혜교원(이하 “산학연구교원”이라 한다)은 본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5년 이상인 교원으로 한다.

②산학연구교원은 뚜렷한 산학협력 연구계획이 있는자에 한한다.

③삭제(2012.03.01.)

④휴직기간은 계속근무년수 산정에서 제외하며, 휴직기간 중에는 산학연구년 신청을 할 수 없다.

⑤산학연구교원으로 선정되었던 교원은 복귀일로부터 3년 이상 근속하여야 산학연구교원을 재신청할 수 있다.(개정2020.10.06.)

⑥ 위 ①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이상 근속하고도 산학연구년을 미실시한 전임교원에 한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산학연구교원을 신청할 수 있다.(신설2016.08.29)

제5조 (신청) 산학연구교원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신청서를 소속 학부장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 (선정) ①산학연구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
②교비지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·외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연구파견이 예정된 교원은 산학연구교원으로 간주하고 산학연구년 선정 대상에서 우선한다.

③산학연구교원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.

1. 제2항에 해당되는 자
2. 대학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
3. 교원업적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자
4. 연구교원으로 선정되었던 횟수가 적은 자
5. 근속기간이 오래된 자
6. 상위 직급인 자

제7조 (인원) 삭제(2012.03.01.)

제8조 (산학연구교원의 처우) ①산학연구교원은 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②산학연구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③산학연구년 기간은 승진 및 호봉 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 년 수에 포함한다.

제9조 (연구교원의 의무) ①산학연구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.

②산학연구년이 만료된 교원은 복귀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제재조치) 산학연구교원으로 파견되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.

1.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은 면직의 절차를 거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.

2. 제9조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산학연구교원은 산학연구년 기간중 본 대학에서 지급한 급여중 상당분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1조 (강의대체) 산학연구교원이 담당하던 교과목 중 강의를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의 강의는 소속학부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강사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12조 (주관부서) 교원산학연구년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.

제13조 (예외규정) 총장은 이 규정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 특례) 제4조제5항의 개정사항은 2020년 9월 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산학연구교원 신청서

결	팀 장	처 장	부총장	총 장
재				
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소 속	학부	전공	직 위
임 용 일 자	년	월	일	근 무 년 수
연 구 기 간	년	월	일 ~	년 월 일(개월간)
신 청 사 유				
연 구 과 제 명				
연구비조달계획				
연구체류기관				
첨 부 서 류	1. 연구계획서 1부 2. 직무보완 대책 및 학부 의견서 1부 3. 기타 증빙서류(초대장 등) 1부			

위와 같이 산학연구교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우송대학교 총장 귀하

직무보완 대책 및 학부 의견서

담당직무 보완대책					
학년도 / 학기	담당과목 및 시간		대 행 자		
	과 목 명	시 간	과 목 명	시 간	성 명
(학년도) (학기)					
(학년도) (학기)					

해당학부 교수 의견서

1. 담당직무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

2. 연구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의견

3. 기타 참고 의견

확 인	전 공 교 수	주임교수	학부장

연구 계획서

연 구 자	학부	전공	①
연 수 기 관 의 공 동 연 구 자			
연 구 과 제 명			
연구의 필요성 :			
연구 방법 :			
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방안			